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5727
----------	-------

발의연월일 : 2023. 12. 1.

발 의 자 : 윤재옥 · 강기윤 · 강대식
강민국 · 구자근 · 권명호
권성동 · 권영세 · 권은희
김기현 · 김도읍 · 김미애
金炳旭 · 김상훈 · 김석기
김성원 · 김승수 · 김영선
김영식 · 김예지 · 김용판
김 용 · 김정재 · 김태호
김학용 · 김형동 · 김희곤
김희국 · 노용호 · 류성걸
박대수 · 박대출 · 박덕흠
박성민 · 박성중 · 박수영
박정하 · 박 진 · 박형수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현
서범수 · 서병수 · 서일준
서정숙 · 성일종 · 송석준
송언석 · 안병길 · 안철수
양금희 · 엄태영 · 우신구
유경준 · 유상범 · 유의동
윤두현 · 윤상현 · 윤영석
윤주경 · 윤창현 · 윤한홍
이달곤 · 이만희 · 이명수
이양수 · 이 용 · 이용호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성
이주환 · 이채익 · 이철규
이태규 · 이현승 · 임병헌

임이자 · 장동혁 · 장제원
전봉민 · 전주혜 · 정경희
정동만 · 정우택 · 정운천
정점식 · 정진석 · 정희용
조경태 · 조명희 · 조수진
조은희 · 조해진 · 주호영
지성호 · 최승재 · 최연숙
최영희 · 최재형 · 최춘식
최형두 · 추경호 · 태영호
하태경 · 한기호 · 한무경
허은아 · 홍문표 · 홍석준
의원(111인)

주 문

2023. 11. 9.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보고됨. 이에 따라 위 각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의해 본회의에서 의제(議題)가 되어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였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이 2023. 11. 28. 다시 발의되게 만들

었음.

또한 여야가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잡아둔 본회의 일정
에 예산안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개
의함으로써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편파적으로 운
영하는 등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는바, 김진표 국회의
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제안이유

국회의장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제20조의2)에 따라 당적 보유가 금
지되고,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하여야 하
나,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채 국회법(제90조 제2항)을 무시하고 2023.
11. 9. 본회의에서 발의 보고하여 의제(義題)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
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이정섭) 탄핵
소추안에 대한 철회를 본회의의 동의(同意)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수용하였음.

국회법(제90조 제2항)의 취지는 본회의 의안의 결정권한이 의안을
심의·심사하는 본회의에 있기 때문에, 발의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숙려기간 이후부터 탄핵소추 의결시한 내에 본회

의가 개의되지 않으면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가 없으므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됨. 국회법(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상 같은 회기 중에는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러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제가 된 의안 철회를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세 건의 탄핵소추안이 2023. 11. 28. 다시 발의되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자초하였음.

둘째,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와 탄핵소추 의결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65조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은 헌법상의 권한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회의 다수와 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와 의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되는 권한임이 분명함.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발의 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의제가 된 의안인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해 국회법(제90조 제2항)을 무시하고, 본회의 표결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수용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부여

된 본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국회의장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

셋째,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제10조)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의사 진행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김진표 국회의장의 위법한 철회 수용으로 인해 다시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심지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편파적인 개의까지 앞장서고 있음. 해당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목적으로 열리는 ‘예산국회’로서 12월 2일 법정시한을 앞두고 예산안이 합의되면 이틀 중 하루를 택하여 의결하기 위해 잡아놓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없는 예비적인 본회의 날짜를 빌미로 교섭단체 간 협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고 있음.

헌정사에서 탄핵소추 발의 보고 후 일방 철회를 한 사례가 없고, 숙려기간 24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본회의의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야당과 함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당의

편에서 의회 폭거를 묵인하면서 편파적인 국회 운영으로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음.

김진표 국회의장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고 있음. 따라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만이 잘못된 국회법을 적법하게 해석 및 적용하여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길일 것임.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